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운영 규정

- 제정 : 2020. 7. 1.
- 개정 : 2021. 2. 26.
- 개정 : 2022. 6. 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원과학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창업친화적 학사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창업친화적 학사제도”라 함은 창업 준비활동 및 실제 창업 활동 등을 학사제도 내의 활동으로 인정하여 학생의 창업을 장려하고 창업으로 인한 학업의 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② “창업 휴학”이라 함은 휴학사유가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창업 휴학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③ “창업대체학점”이라 함은 학생들의 창업 준비활동을 통해 학습목표의 달성이 가능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④ “창업자”라 함은 창업기업의 대표로서,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로 명시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⑤ “예비창업자”라 함은 6개월 이내에 본인명의로 사업자 등록증을 낼 예정인 자를 말한다.

제3조(담당) ①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은 창업교육센터(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②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운영에 대한 중요사항은 창업교육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③ 위원회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2 장 창업 휴학

제4조(창업휴학 인정) ① 창업 휴학은 학업과의 연계성 유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학생의 전공과 관련된 분야로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관련 전공 분야의 창업이 아니더라도 창업 휴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허용한다.

5-0-27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운영 규정

- ② 위원회는 창업 휴학의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목적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휴학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창업휴학 적용 제외대상 업종)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창업은 창업 휴학을 허용하지 않는다.

1. 일반유흥주점업
2. 무도유흥주점업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제6조(창업 휴학 신청 자격) ① 학생 창업 휴학은 신청 학생이 창업기업의 대표(공동대표까지 포함)로 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다음 각호의 자격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할 시 창업 휴학을 신청할 수 있다.

1. 1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대학에서 제공하는 창업 관련 교과목을 1개 이상 이수한 학생
2. 주관부서에서 진행하는 창업동아리 활동을 6개월 이상 한 학생
3. 창업 관련 교과목 이수와 창업동아리 활동을 수행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라도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 창업을 하는 경우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
4. 교내·외 창업 관련 입상 또는 선정 실적이 있는 학생

제7조(창업 휴학기간) ① 창업 휴학은 1년 단위로 하며, 재학 중 최대 2년(4학기)까지 휴학할 수 있다.

- ② 휴학 사유가 창업으로 인한 창업 휴학은 일반휴학 횟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8조(창업 휴학 신청 및 절차) ① 창업 휴학 신청은 일반휴학과 마찬가지로 학기마다 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창업기준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인 설립 등기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창업 활동을 목적으로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호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일반휴학 신청 기간 1개월 전까지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1. 창업휴학신청서
2. 창업자의 경우 창업관련 서류(창업휴학 사업보고서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3. 예비창업자의 경우 창업휴학 사업계획서
4.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9조(승인) ① 위원회에서는 신청서류에 대한 심의를 통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 ② 주관부서는 창업 휴학 승인 대상자 명단을 일반휴학 기간 내에 학적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3 장 창업 대체학점 인정제

제10조(창업대체학점 인정) ① 창업대체학점으로 인정되는 활동은 창업동아리로, 일정 조건 충족 시 학점으로 인정한다.

② 창업대체학점은 학생의 전공 분야로 한정하고, 그 이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한다.

③ 창업대체학점으로 인정하는 교과목의 명칭은 ‘창업실습’으로, 이수구분은 전공일반으로 한다.

④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여 학기당 2학점 이내에서 인정가능하며, 1학점당 15시간 이상의 동아리 활동을 해야 한다.

⑤ 과목은 매학기 개설할 수 있으며, 전공과목 개설학점 무관하게 추가로 개설할 수 있다.

⑥ ‘창업실습’과목의 수강신청 학점은 학생의 수강신청 최대/최소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1조(창업동아리 인정기준) ① 창업동아리 활동이 ‘창업실습’ 교과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주관부서에 등록·관리되는 창업동아리로서 대학의 전임교원이 지도교수로 등록하여 학기별로 10회 이상 지도해야 한다.

2. 창업동아리는 최소 2인 이상의 학생으로 등록한 경우여야 한다.

3. 사업계획서 및 창업동아리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결과물의 제출과 평가가 가능한 경우여야 한다.

4. 창업동아리 활동기간 동안 창업역량강화 프로그램(비교과프로그램) 이수, 교내 창업경진대회 등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12조(신청 및 신청절차) ① ‘창업실습’ 교과를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기 개시일 1개월 전까지 본교에서 정한 신청서를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창업교육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학기 개시일 15일 전까지 교무과에 과목 개설을 요청한다.

제13조(성적평가와 학점인정) ① 학생은 학기종료 3일 전까지 성적처리를 위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지도교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창업동아리 활동일지 (10회 이상)

2. 창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이수 및 교내·외 창업경진대회 참가 등의 활동 증빙 서류

3. 창업실습 종합보고서

② 지도교수는 학기 종료일까지 전 항의 서류를 평가한 뒤 성적인정 평가서를 작성하여 전 항의 서류와 함께 주관부서에 제출한다.

③ 위원회는 지도교수의 성적인정 평가서를 바탕으로 창업 대체학점 인정에 대한 적격 여부를 승인한다.

5-0-27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운영 규정

- ④ 주관부서는 성적입력 기한내에 위원회의 승인여부를 지도교수에게 통보하고, 지도교수는 승인된 성적을 입력함으로써 학점인정절차를 완료한다.
- ⑤ '창업실습' 교과목의 성적은 이수 P(Pass), 미이수 F(Fail)로 평가한다.

제14조(지도교수 시수 인정 및 업적평가 반영) ① '창업실습' 교과목 지도교수의 교육 시수는 1학점당 1시수로 인정한다.

- ② 지도교수에게는 교원업적평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업적평가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